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자동차인도

원고, 항소인 [redacted]

[redacted]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 [redacted]

피고, 피항소인 [redacted]

제 1 심 판 결 [redacted]

변 론 종 결 [redacted]

판 결 선 고 [redacted]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.

2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 중 자동차 인도를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